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9114 제출연월일: 2025. 3. 19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의 농림·해양·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서의 농림·해양·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25조(농림·해양·수산업 지원) | 제25조(농림・해양・수산업 지원) |
|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 |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 |
| 지역 에서의 농림ㆍ해양ㆍ수산 | 지역에서의 농림ㆍ해양ㆍ수산업 |
| 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 | 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|
|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|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 |
| 따라 지원할 수 있다. | 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|
| | 지원할 수 있다. |
| ②・③ (생 략) | ②・③ (현행과 같음) |